



서울고등법원

제4민사부

판결

사 건 2025나208971 논문 게재 금지 등
원고, 항소인겸피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일

담당변호사 장지원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이강혁

피고, 피항소인겸항소인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감우

담당변호사 이영욱

제1심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7. 11. 선고 2022가합559953 판결

변론종결 2026. 4. 23.

판결선고 2026. 5. 21.

주 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제1심판결 별지1 목록 기재 논문을 게재 중인 인터넷 매체에서 삭제하고, 인쇄, 제본, 판매, 게재, 배포 및 공중 전송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피고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① 원고 논문¹⁾의 저작권 침해를 원인으로 한 저작권법에 기

1) 원심이 사용한 약칭을 그대로 따른다. 이하 같다.



한 금지청구 및 손해배상청구(이하 '제1청구'라 한다)와 ② 원고 논문의 출처표시 누락 및 실험데이터 무단 이용에 따른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민법에 기한 금지청구 및 손해배상청구(이하 '제2청구'라 한다)를 하였다. 제1심법원은 제1청구를 기각하고 제2청구 중 금지청구 및 손해배상청구를 각 일부 인용하였다. 원고는 제1심판결의 제2청구 중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고²⁾ 피고는 제2청구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제1심판결 중 제2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와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조사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서 추가로 조사한 증거를 보태어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3항에서 피고가 항소이유로 강조하는 주장에 대하여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3. 추가하는 판단

가. 피고는, 피고 논문 중 원고 논문과 일부 유사한 부분은 같은 출처를 인용한 것일 뿐 원고 논문에 의거하여 작성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측은 원고에게 직접 피고가 피고 논문 작성에 있어 원고 논문의 출처표시를 누락한 점을 인정하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낸 바 있고(갑 제1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의 석사학위논문 지도교수는 2019. 12. 25. 원고에게, '피고와 면담 결과 고의성은 없었고 문헌 표시를 함에 있어 원고 논문의 내용 인용시 그 부분의 원저자 표기

2) 원고는 항소이유서 2면에서 제1심판결 중 ① 청구 부분은 항소하지 아니하고 ② 청구 중 손해배상청구 부분에 관하여만 항소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다.



에만 신경을 쓰는 바람에 원고 논문의 표기 누락이 초래된 것으로 생각된다'는 취지의 이메일을 보냈고, 피고는 2019. 12. 26. 원고에게, '인용부분과 참고문헌을 맞춰보지 못한 점이 저의 큰 불찰이다. 원고가 피고 논문을 보고 얼마나 상처가 크고 화가 났을지를 가늠해보았다. 지도교수를 통해 원고 지적을 듣고 부끄러웠다. 원고 논문을 고의적으로 누락한 것은 아니다. 죄송하고 사과드린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낸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는 이를 지적하는 제1심의 판결이유에도 불구하고 당심에 이르기까지 위 이메일 내용이 진실이 아니라고 불만한 사정 등 자신의 이 부분 주장과 상반되는 위 선행언동에 관하여 납득할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였다. 뿐만 아니라, 을가 제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 논문의 순번 1번 부분 중 두 번째 문장은 원고가 원출처인 외국 문헌의 해당 부분(을가 제2호증의 6쪽 등)을 일부 오역한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 논문의 해당 부분은 원고 논문과 위 오기까지 동일한 사정이 확인된다(한편 피고는 당심에서도 피고 논문에 위 부분의 출처로 표시한 피인용 외국 문헌을 제출하지 못하였고, 위 내용이 일반적으로 공개된 정보라고 주장하며 제시한 을가 제3호증의 문헌 부분은 위 부분의 내용인 농업 생산량에 관한 내용이 아니라 이와 구별되는 재배지 면적에 관한 내용이어서 피고의 주장을 뒷받침한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고가 원심에서 제출한 증거에 더하여, 당심에서 자신 역시 원고 논문에 표시된 출처와 같은 문헌을 번역하였다고 주장하며 제출한 을가 제34, 35, 36호증 등의 문헌을 원고 논문의 각 해당 부분과 비교하여 보더라도 원고의 번역은 위 원출처의 표현을 그대로 직역한 것이 아니고 자신의 논문 내용에 맞추어 적절히 의역한 것으로서 그 자체로 원고 논문 내지 이와 실질적으로 유사한 피고 논문에 기재된 표현으로 번역될 수밖에 없다고 보이지 않을 뿐 아니라, 복수의 관련 논문 내용을 함께 조합하여 독자적인 언어



로 표현한 것으로 보이는 점에서 원고의 창의와 정신적 노력에 의한 창작적 표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피고는 또한, 원고 논문 중 순번 제1 내지 7, 9 부분의 경우, 일반지식 또는 기본적인 개념에 불과할 뿐 원고의 저작물 내지 독창적인 아이디어가 아니므로 이에 기하여 피고 논문 중 해당 부분을 표절로 보아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부분들은 모두 원고가 외국 문헌을 한글로 번역하여 자신의 독자적인 언어로 정리한 것이거나 자신의 지식 등을 구체적으로 표현한 것으로서 창작성 있는 저작물에 해당함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피고가 이를 적절한 출처표시 없이 자기 것처럼 사용한 행위는 연구부정행위(표절)로서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가 지적하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7. 14. 선고 2014가합574469 판결은 수학이론서에 관한 사안으로 이 사건과 사실관계를 달리하므로 그대로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하는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우진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6-12

판사 송미경

판사 김광남